

질의요지	답변요지
<p>어 이 공원용지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제를 의결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해제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종원 의원)</p> <p>○ 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공원용지를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결하여 시에 통보된 것인데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p> <p>시에서 해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정인섭 의원)</p>	<p>고 해제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임.</p> <p>○ 도시계획결정의 입안과 결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장이 입안을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는 처지이나 의회의 의지를 받들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음.</p>
<p>6. 토론판론 없음</p> <p>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p> <p>8. 심사결과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p> <p>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p> <p>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차 불요함</p> <p>11. 의견서 관악구 남현동 512-2, 6, 7 잡종지 930평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은 당초 이 공원용지 지정시부터 잘못 지정된 이유로서 -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하였으며, - 현 공원용지는 관악산 자연공원에 연접하여 또 다른 공원을 지정할 이유가 없고, - 지형으로 보아 현지는 구릉이 되어 공원용지로서는 적당치 않을 뿐 아니라 - 서울시는 도시공원법에 정한 공원면적보다 초과하여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의</p>	<p>- 사유를 밝히어 이를 해제하여 주도록 의회에서 의결하여 시에 통보하여 주었음에도</p> <p>- 집행부에서는 명백한 이유없이 다만 공원용지를 현황대로 존치한 것이 좋다는 등 이유 하나만으로 의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p> <p>- 시의회에서 당초 의결한 대로 시에서 청원인이 요구한 관악구 남현동 512-2, 6, 7일대 930평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주도록 하는 것임.</p> <p>.....</p> <p>신림동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p>
	<p>1. 심사경과            ○ 청원자 : 관악구 신림동 598-183 김삼주            ○ 소개의원 : 강정석 의원            ○ 접수일자 : 1993.11. 4(접수번호 : 109번)            ○ 회부일자 : 1993.11. 8            ○ 상정일자 :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 위원회('94. 2.21) 상정, 의결</p> <p>2. 청원요지            ○ 관악구 신림동 598번지 내 대지 20필지</p>

<p>(약 1,400평)의 유허가건물 6동인 이 지역은 '75년 이전에 임야를 택지로 개발(형질변경)하여 '76년부터 건축허가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허가건물 6동에 대한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p> <p>○ 1977년 9월 당해지역을 포함한 당초의 임야 지적선을 따라 관악산 자연공원이 결정(건설부 고시 제138호) 됨으로써, 일반 주거지역이 부당하게 공원용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임.</p> <p>○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서 현지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된 당해 공원용지가 현실에 맞게 해제(재조정)되도록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조치 있기를 청원하는 내용임.</p> <p>3. 취지설명 요지(강정석 의원)</p> <p>○ 청원지역은 원래 임야로서 1975년 이전에 택지로 개발되고, 1976년과 1977년에 유허가주택 6동이 건축, 입주되어 주택자가 형성되었던 지역이었으나, 1977년 7월 9일 관악산 자연공원 결정으로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뮤었으며, 16년간이나 행정상 방치된 곳으로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회복 되기는 불가능한 지역임.</p> <p>○ 공원용지로 시설결정 당시 자격정리가 미쳐 안 되고, 택지화된 경계선을 사실확인 없이 1/5,000 지번도인 서울시종합계획도를 기준으로 했기에 임야 지적선으로 오인되어 위 택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됨.</p> <p>○ 본 청원은 과거 관행상 잘못과 획일적인 행정으로 15년간이나 방치상태로 누적된 주민숙원인 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선별적인 완화로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함.</p> <p>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송재경)</p> <p>○ 청원인은 관악구 신림동 산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를 해제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1977년 서울시가 이 토지를 공원용지로 시설결정하면서 대상토지의 현황파악은 물론, 지역주민이나 토지주와 의견 수렴 없</p>	<p>이 도면자료만을 토대로 이미 택지화된 대지까지 임야로 오인하고 임야지적선에 따라 임의로 계획선을 그음으로써 청원인 등의 대지까지 부당하게 공원용지로 뮤였다고 주장하고 있음.</p> <p>○ 그런데 시의 이 지역 공원결정 경위를 보면 1968. 1.15 관악산 공원 결정시에는 이 지역이 공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71.12.22 청원지역 부근에 사도개설허가를 하고 1976년에서 1977년 사이 청원지역에 주택 6동을 건축 허가하여 준공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음.</p> <p>○ 또 1977. 7. 9 공원 재정비 차원에서 관악산 자연공원을 변경 결정하고 1982.11. 11 변경지적 고시를 하면서 청원요구 지역인 사도개설 준공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이미 주거지화 된 지역까지 공원으로 고시한 일이 있어 '91. 7. 19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이 청원 요구지역을 적법 택지 조성지역으로 확인하였으나 공원 용지 해제에서는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음.</p> <p>○ 청원인이 공원용지의 해제를 바라는 신림동 598일대 약 4,207m<sup>2</sup>(1,400평)는 그중에서 11필지, 1,750m<sup>2</sup>는 '71년 12월 사도개설허가 및 준공에 따라 택지화된 곳에 사후에 공원용지로 결정된 것이며, 나머지 16필지 2,457m<sup>2</sup>는 공원결정 1년전인 '76.8월부터 건축허가 된 6동의 건물이 있어 이 지역은 택지로 바뀌어진 경위로 보아 지역상 성질이 다른 점은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하여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는 공원용지 지정 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지 확인후 결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p> <p>【참 고】</p> <p>공원해제에 따른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이 지역은 관할구에서 구단위기본계획에 의거 자체에서 공원해제 여부를 검토중인 지역임.</p>
--	---

##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최재범)

질의요지	답변요지
○ 청원구역은 75년 이전에 택지로 개발되었고, 다음 76년과 77년 사이에 이곳에 6동의 건축허가된 사실을 인정하는가 (신용길 의원)	○ 현지에는 6동의 건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건물들은 76년과 77년에 허가되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곳은 택지가 개발되어 건물까지 지어진 곳인데 택지로 개발된 경계선의 확인없이 인접임야를 공원용지로 지정하면서 택지를 개발하여 건물이 들어선 곳까지 현지확인 없이 도상에다 잘못 공원용지를 그어 버린 것 아닌가(권광택 의원)	○ 당시 공원용지를 지정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관련서류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 보존서류는 정도에 있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책임자를 밝히고 잘 못된 사항은 시정하여야 한다(신용길 의원)	○ 관련서류를 찾아내고 문제점이 있을 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음.
○ 잘못 지정되었다면 당연히 해제하여 주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 아닌가(김순애 의원)	○ 관계 구청과 협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이후에는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6. 토론요지 생략	종전에는 임야로 있었으나, 75년에 형질변경하여 택지로 개발한 사실이 있고, 그후 76년에는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 6동의 건물까지 신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7.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 77년 9월 인근지역 관악산 자연공원을 지정하면서 청원구역(형질변경되어 건축까지 된 지역)은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이 지역을 자연공원 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8. 심사결과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 또 이 지역이 현재 완전 주거지로 유지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이 지역을 지역현황에 맞게 공원용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본 청원수용에 따른 예산조치는 불요함.	
11. 의견서 ○ 청원인이 주장한 관악구 신림동 598번지 일대 대지 20필지 약 1,400평의 토지는	